

[고객정보유출]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고객정보 유출 및 광고문자 발송 행위 - 영업비밀

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 사안의 개요

강남 성형외과 상담실장 - 다른 성형외과로 이직, 전 성형외과의 고객리스트, 연락처

무단유출, 광고성 문자 발송함

법원 판결 -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벌금 3백만원 선고

### 의료법위반 부분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2. 2.경 파주시 H, 901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F의원'에 높은 연봉을 받고 입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입수한 위 D 성형외과의 고객인 A 등 51명에게 "(광고) F성형외과 주름성형(리프팅) 250, 눈쳐짐수술(상, 하안검) 각 80, 매물 60, 매직얏/뒤프임/뒹트임 각 40, 연세대 출신 원장님으로 10,000건 이상의 주름성형 노하우로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상담문의 : G"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명의 고객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인 F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영업비밀, 기술유출, 경업금지, 전직금지, 민형사소송, 다수사건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